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21
----------	--------

제출일자 : 1999. 5 . 29.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개정이유

조례·규칙·규정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업무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규제로 인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 하고자 함

주요골자

-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제출 폐지(안 제5조제3항)
- 공유재산 사용허가 표지부착 의무 폐지(안 제13조제6호)
- 청사의 설계기준과 규모 제한 일부폐지(안 제45조중 2호, 3호, 5~7호 삭제)
-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따른 심의규정 폐지(안 제46조)

개정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조례·규칙·규정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업무 일제정비 계획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후 공유 재산으로 확정된”을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으로 한다.

제1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제2호및제3호와 제5호내지 제7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은익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②(생략) ③ <u>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p> <p>제13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 ~ 5. (생략) 6. <u>사용허가표지 부착</u> 7. ~ 8. (생략)</p> <p>제45조(청사의 설계) <u>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u> 1. (생략) 2. <u>지역사회의 상직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u> 3. <u>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u> 4. (생략) 5. <u>철근콘크리트, 냉·난방시설 원칙</u> 6. <u>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u> 7. <u>청사 주변에 공원화 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u></p> <p>제46조(도지방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조례) <u>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지방 건설 기술심의 위원회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한다.</u></p>	<p>제5조 (은익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u>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u> </p> <p>제13조..... </p> <p>1. ~ 5. (현행과 같음) 6. <u><삭 제></u> 7. ~ 8. (현행과 같음)</p> <p>제45조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 2. <u><삭 제></u> 3. <u><삭 제></u> 2. (현행과 같음) 5. <u><삭 제></u> 6. <u><삭 제></u> 7. <u><삭 제></u></p> <p>제46조 <u><삭 제></u></p>